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2. 12. 1(목) 10:00

제24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
(문화환경국 소관)



복 지 건 설 위 원 회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275호
- 나. 제 출 자 : 엄셋별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2. 11. 10.
- 라. 회부일자 : 2022. 11. 10.

2. 제안이유

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」에 따라 우리 구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우리 구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(안 제2조).
- 나.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).
- 다.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에서 제7조).
- 라. 지도·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).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」 및 동법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5. 검토의견

가. 제정 이유

본 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, 나아가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금천구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나. 주요 내용

1) 안 제2조(정의)

- 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(정의) 규정을 인용하여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.

2) 안 제4조(기본원칙)

- 안 제4조는 모든 주민의 문화 참여 및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규정함.(법 제3조 근거)

3) 안 제6조(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)

-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 및 시설·장비 지원 등 필요한 지원 사항을 명시함.(법 제15조 근거)

4) 안 제7조(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)

-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(법 제21조 근거)

다. 검토의견

- 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」은 국민은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는 기본원칙을 천명하고,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· 실시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정하고 있음.
- 본 안건은 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」에 따라 금천구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내 문화예술교육 기반 조성 및 일상 속 문화예술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취지와 입법 타당성이 인정되며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문화예술교육사업은 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」에 따라 ‘학교문화예술교육’ 과 ‘사회문화예술교육’ 으로 이분화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이를 점차 융 · 복합하여 지역 내 학교-복지시설-평생교육기관-문화시설 등을 잇는 통합형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, 지역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생태계를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됨.
- 조례 제정 현황(2022. 11월 기준)
 - 서울시 조례(2020. 5. 19)
 - 서울교육청(2015. 12. 31)

관계법령

□ 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」

[시행 2022. 7. 19.] [법률 제18768호, 2022. 1. 18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법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,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5조의2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 교육청 상호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,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
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.

제11조(경비지원 및 보조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 및 지역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5조(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·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·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5조의2(학교예술강사의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적 소양 및 예술적 감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교원과 협력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강사(이하 이 조에서 “학교예술강사”라 한다)를 두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7조(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의 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·축제·학예회·발표회 등 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8조(지역사회와의 지원체제 구축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학교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를 연계·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·전시·상영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9조(경비의 지원 및 보조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제21조(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·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·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22조(민간 교육시설 등의 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하고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민간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제23조(지역 사회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의 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 활동, 축제, 발표회 등 사회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24조(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·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·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26조(경비의 지원 및 보조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□ 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」

[시행 2022. 7. 19.] [대통령령 제32802호, 2022. 7. 19., 일부개정]

제14조(경비지원의 대상 등) 법 제19조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지원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대상

- 가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
- 나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유치원
- 다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- 라.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

2. 지원항목

- 가. 학교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비
- 나.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조사 및 연구비
- 다.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교과용도서 구입 및 교육자료의 개발·보급비
- 라.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·장비 구입비

제16조(경비지원의 대상 등) ① 법 제26조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지원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대상

- 가. 사회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
- 나. 법 제24조에 따른 시설 및 단체

2. 지원항목

- 가.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
- 나.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
- 다.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
- 라.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·장비 구입비